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정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047

발의연월일: 2021. 11. 1.

발 의 자:서정숙・구자근・권명호

김석기 • 김영식 • 김예지

박대수 · 박대출 · 박성민

백종헌 · 서범수 · 서일준

양금희 • 이만희 • 이채익

이철규 · 정경희 · 최춘식

추경호 · 하영제 의원

(2091)

제안이유

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안전성·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 수입·판매 등 온라인에서의 의약품, 의약외품의 불법 거래가 지속되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있음

그러나 현행법은 제조·수입업자, 품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허가 ·제조관리 등 오프라인에서의 유통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라인상 의 약품·의약외품의 불법유통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움.

이에 온라인 공간에서의 의약품 등 불법 판매·광고에 대한 상시적 인 모니터링과 법령을 위반한 제품에 대한 행정조치 체계를 확립하고,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 등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사항의 수정·삭제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한편, 약업단체가 의약품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식약처장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에서 건전한 의약품 등 유통문화 조성과 이를 통해 국민 건강과 소비자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 의약품, 의약 외품을 판매,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의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1조의2제2항).
- 나.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의약품의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하거나 위반 사항의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불법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1조의2제5항).
- 다. 온라인 불법 유통 의약품 관리 강화를 위해 온라인 불법 유통 의약품 적발 및 조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1조의2제8항).
- 라.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등에 자율모니터링, 교육, 정보 제공

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7 조의2 신설).
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1조의2의 제목 "(의약품 불법판매의 알선·광고 금지 등)"을 "(의약품 불법판매 및 알선·광고 금지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(이하 "정보통신망"이라 한다)을 이용하여 하는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.
- 1. 제44조, 제5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
- 2. 제6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 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는 행위
- 3.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
- 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61조의2제3항(종전의 제2항) 전단 중 "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(이하 이조에서 "정보통신망"이라 한다)을 이용하여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

또는 제1항을"을 "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위반사항 확인 시"로, "경우에는"을 "때에는"으로, "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"를 "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의5에 따라 지정된 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)"로, "자료제출"을 "자료의제출"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자료제출"을 "자료 제출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4항) 중 "따른 자료제출"을 "따른 모니터링의 내용, 방법 및 절차,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"로, "제3항"을 "제4항"으로, "필요한"을 "관하여 필요한"으로 한다.

-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하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의약품의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하거나 위반 사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불법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조치 등을 하도록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1.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

- 2.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결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 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
-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특정할 수 없어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같은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 결과 및 심의·시정요구 요청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릴 수있다.

제6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61조의3(의약품 불법판매 등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등) ① 제61조의 2제2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모니터링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 -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6조 전단 중 "제61조"를 "제61조, 제61조의2(제44조, 제50조제1항· 제2항 위반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다)"로 한다.

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67조의2(자율규제) ① 제67조에 따른 사단법인(이하 "사단법인"이라 한다)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구성된 단체는 의약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 -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구성된 단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하는 제61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 -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단법인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구성된 단체가 수행하는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92조의2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3. 제61조의3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제9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97조의3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 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1. 제6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
 - 2. 제6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이 요청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
 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

약품안전처장이 부과 · 징수한다.

제98조제1항제7호의4를 삭제한다.

법률 제18307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제98조제1항제7호의6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, 법률 제18307호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제98조제1항제7호의6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1조의2(의약품 불법판매의 알	제61조의2(의약품 불법판매 및 알
<u>선·광고 금지 등)</u> ① (생 략)	<u>선·광고 금지 등)</u> ① (현행과
	같음)
<u><신 설></u>	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「정
	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
	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
	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(이하
	"정보통신망"이라 한다)을 이용
	하여 하는 행위가 다음 각 호의
	어느 하나의 행위에 해당되는지
	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.
	<u>1. 제44조, 제50조제1항·제2항</u>
	을 위반하여 의약품을 판매하
	<u>는 행위</u>
	2. 제6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
	는 것 또는 같은 조 제2항에
	따른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
	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는
	<u>행위</u>
	3.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
	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
	준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행위
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<u>「정</u>	<u>③</u> <u>제2항</u>
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	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위반사

등에 관한 법률 1 제2조제1항제 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(이하 이 조에서 "정보통신망"이라 한다) 을 이용하여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또는 제1항을 위반하는 행 위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|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(이하 이 조에서 "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 필요 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 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야 하다.

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약품 이 판매되거나 제1항을 위반하 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<u>항 확인 시</u>
<u>때에는</u> 「정보통신망 이용촉
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
률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
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(「정보
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
등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의5에
따라 지정된 국내대리인을 포함
한다)
- <u>자료의 제출</u>
자료 제출
<삭 제>

<신 설>

<신 설>

-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하는 제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 등에게 위반 사항이 확인되 는 의약품의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하거나 위반 사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불법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조 치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 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1.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 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 우
- 2.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결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

<신 설>

의 범위 및 절차, 제3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경우

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특정할 수 없어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「방 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| 제18조에 따른 방 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같은 법 제 21조제4호에 따른 심의 및 시정 요구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| ⑦ ---- 따른 모니터링의 내 용. 방법 및 절차.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---- 제4항-------관하여 필요한-----

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 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가 제2 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 용 및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 결과 및 심의·시정요구 요 청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에게 알릴 수 있다.

제61조의3(의약품 불법판매 등 모 니터링 업무의 위탁 등) ① 제6 1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의약 제66조(준용) 의약외품에 관하여 는 제60조, 제61조, 제62조 및 제63조(의약외품 중 제2조제7호 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60 조, 제61조 및 제62조)를 준용한 다. 이 경우 "의약품"은 "의약외 품"으로, "제31조제1항부터 제3 항까지 및 제9항"은 "제31조제4 항ㆍ제9항"으로, "제31조제2항 ·제3항·제9항"은 각각 "제31 조제4항ㆍ제9항"으로, "제52조 제1항"은 "제52조제2항"으로, "제56조부터 제60조까지"는 "제 65조, 제65조의2부터 제65조의4 까지 및 제66조에 따라 준용되 는 제60조"로 본다.

<신 설>

품안전처장의 모니터링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 다.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 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 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. 제66조(준용) ---------- 제61조, 제61조의2 (제44조, 제50조제1항·제2항 위반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다)----

제67조의2(자율규제) ① 제67조에

제92조의2(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제의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「형법」제12 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 1.~2. (생략)

따른 사단법인(이하 "사단법인"
이라 한다) 또는 정보통신서비
스 제공자등으로 구성된 단체는
의약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정
보를 제공하고 국민 건강을 보
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강령
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
로 구성된 단체는 정보통신망을
이용하여 제61조의2제2항 각 호
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지
아니하도록 자율규제 가이드라
이 이 거귀서 지체하 스 이디
<u>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</u>
①
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
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 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단법인
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 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단법인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
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 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단법인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으로 구성된 단체가 수행하는
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 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단법인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으로 구성된 단체가 수행하는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
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 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단법인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으로 구성된 단체가 수행하는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 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단법인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으로 구성된 단체가 수행하는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 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단법인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으로 구성된 단체가 수행하는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 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단법인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으로 구성된 단체가 수행하는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1.~2.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3. (생 략) <신 설>

제98조(과태료) ①다음 각 호의 제98조(과태료) ①-----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.

1. · 2. 삭 제 2의2. ~ 7의3. (생략) 7의4. 제61조의2제2항을 위반하 | <삭 제> 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

3. 제61조의3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4. (현행 제3호와 같음)

제97조의3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- 1. 제6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
- 2. 제6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요청한 조치를 하 지 아니한 자
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 수한다.

2의2. ~ 7의3. (현행과 같음)

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7의5. ~ 11. (생 략)

② (생략)

법률 제18307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

제98조(과태료) ①다음 각 호의 제98조(과태료) ①-----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.

1. • 2. 삭 제

2의2. ~ 7의5. (생략)

7의6. 제61조의2제2항을 위반하 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 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

7의7. ~ 11. (생 략)

② (생략)

7의5. ~ 11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법률 제18307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

2의2. ~ 7의5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

7의7. ~ 11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